

110

(02-2133-3677)

04524

334 () 5

(:)

03658



: 2021	

[] : 8,601,580 kg	
: 15 /kg	
: 1.024	
1	

: 442,682,050	
: 232,921,340	
: 209,760,710	
/	

0134212122309838002			
2022		022567	
()	()	111-83-00749	
		248 ()	
2022 05 20		209,760,710	
		209,760,710	

02-2133-3677

2022 04 29

(www.giro.or.kr)



3%가



* 가
()
* 가 3%
* 30

0134212122309838002			
2022		022567	
()	()	111-83-00749	
		248 ()	
2022 05 20		209,760,710	
		209,760,710	

02-2133-3677

2022 04 29

3%가



납부 방법 안내

인터넷뱅킹 납부 (국고금 수납은행)

사업자용 인터넷뱅킹 접속

공과금-기금/국고 선택

사업자등록번호 또는
고지서 납부번호로 조회 후 납부

- 개인 인터넷뱅킹으로 납부 불가능
- 은행별로 메뉴 및 납부절차 다를 수 있음

※ 은행 방문하여 창구 수납 가능

인터넷지로 납부 (신용카드 납부가능)

www.giro.or.kr 접속

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국고금 선택

기금 및 기타 국고 선택

주인/법인/사업자등록번호 또는
납부번호로 조회 후 납부

- 카드수수료 납부자 부담(납부금액의 1%)
- 신용카드 승인일이 납부일로 지정

1. 부과근거

- 자원순환기본법 제21조(폐기물처분부담금)

2. 납부기한 경과 후 납부방법

-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 3%의 가산금이 가산된
독촉 고지서를 재교부 받아 납부하여야 합니다.

3. 이의신청

-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납부통지를 받은 날부터
30일 이내에 공단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4. 주의사항

- 한국환경공단 계좌로는 납입 불가(가상 계좌 없음)



1. 폐기물처분부담금제도란? (자원순환기본법 제21조)

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폐기물을 처분하는 지자체 및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여 최대한 재활용되도록 유도하는 제도입니다.

2. 폐기물처분부담금 납부의무자 및 징수기관

부과대상	납부의무자	징수기관
사업장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경우 (0t가 및 이하의 경우 제외)	폐기물처리법 제85조(항)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*	한국환경공단**

- * 생활폐기물은 특별자치시, 특별자치도,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납부의무자(시·도지사가 징수)
- ** 지자체가 설치·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사업장폐기물은 시·도지사가 징수

3. 폐기물처분부담금 산정방법

$$\text{폐기물처분부담금} = \text{폐기물 소각} \cdot \text{매립 처분량} \times \text{부과요율} \times \text{산정지수}$$

- * 산정지수는 처분년도 기준으로 '18년은 1, '19년은 1.01%, '20년은 1.023, '21년은 1.024 적용

4. 폐기물처분부담금 요율 (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별표6)

폐기물유형	요율		
	매립하는 경우	소각하는 경우	
1. 생활폐기물	kg당 15원	kg당 10원	
2. 사업장폐기물 (건설폐기물 제외)	불연성	kg당 10원	-
	가연성	kg당 25원	kg당 10원
3. 건설폐기물	kg당 30원	kg당 10원	

- * 사업장폐기물 불연성·가연성 구분 등 세부기준은 「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」 별표6 참조

5. 신고시기

구분	납부의무자	신고시기	신고대상
정기신고	사업장폐기물배출자 (수시신고대상 제외)	매년 3월 31일까지	전년도 폐기물 소각매립 처분량
수시신고*	건설공사 또는 작업 폐업 등에 따른 폐기물 배출이 연도 내 종료되는 배출자	폐기물처리 종료일부처 30일 이내 ※ 감면은 다음연도에 신청 9월 31일까지	당해연도 1.1부터 배출종료일까지의 폐기물 소각·매립 처분량

- *수시신고 세부기준은 「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」 제20조제1항 참조

6.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조건 (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별표5)

감면대상	감면비율(%)	
① 자가 매립 후 재활용	매립한 연도의 12월 31일까지 재활용	100
	매립한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2년 이내에 재활용	50
② 소각열에너지회수	75% 이상 회수하여 이용	75
	60% 이상 ~ 75% 미만 회수하여 이용	60
③ 폐기물부담금 납부 후 처분	50% 이상 ~ 60% 미만 회수하여 이용	50
	폐기물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해당 재물·재료·용기를 소각 또는 매립	100
④ 중소기업	연간 매출액이 10억원 미만	100
	연간 매출액이 10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	50
⑤ 지정폐기물 처분	지정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	100
⑥ 도서지역 폐기물 처분	도서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해당 도서 내에서 소각 또는 매립	100
⑦ 재난폐기물 처분	재난으로 발생한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	100
⑧ 독립시설 정비 폐기물 처분	지자체 폐립시설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급격한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	100
⑨ 불법폐기물 처분	지자체가 불법투기·성치된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	100

- * 감면조건외 세부기준은 「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」 별표5 참조

7. 폐기물처분부담금 신고·납부절차

○ 정기신고

납부의무자	매년 3월 31일까지	① 폐기물처분부담금 신고서 제출 (온라인/서면) ② 감면신청 및 ③ 분할납부 신청 (각 해당자)
한국환경공단	매년 4월 30일까지	폐기물처분부담금 산정 및 납부통지
납부의무자	매년 5월 20일까지	폐기물처분부담금 납부 (- 은행 등) *은행납부는 18은 5.20, 19은 7.20, 20은 9.20, 21은 11.20까지 납부

○ 수시신고

1. 신고 및 납부 (공통)		
납부의무자	폐기물처리 종료일부처 30일 이내	폐기물처분부담금 신고서 제출 (온라인/서면)
한국환경공단	신청서 접수일부처 30일 이내	폐기물처분부담금 산정 및 납부통지
납부의무자	납부통지일부처 20일 이내	폐기물처분부담금 납부 (- 은행 등)
2. 감면 신청 (해당자에 한함)		
납부의무자	※ 다음연도의 3월 31일까지	감면 신청 (해당자)
한국환경공단	감면신청일부처 14일 이내	감면금액 산정 및 환급 (- 납부의무자)